

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김광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4일  
발 의 자 : 김광수, 김제리, 김기덕, 김정환,  
유정희, 송명화, 김경영, 송정빈,  
김생환, 이광성, 유 용, 이광호  
의원 (12명)

### 1. 제안이유

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적 용어사용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음. 특히 ‘저출산’이라는 단어는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차별적 용어로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가. ‘저출산’이라는 용어를 ‘저출생’으로 함(안 제3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저출산”을 “저출생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고령화, 저출산,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.</p> <p>1.----- <u>저출생</u>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